2021년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2021. 3.



목 차

I. 수립 배경 ···································
Ⅱ. 2020년 추진성과 및 평가 2
Ⅲ. 2021년 연근해 수산자원 동향 6
Ⅳ. 2021년 시행계획 추진방향7
♡. 2021년 세부 시행계획8
1.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자원관리 ······8
2. 감소된 수산자원의 회복10
3.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평가 ······ 12
4. 연근해 서식·생태환경 개선 ······ 14
5.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문화 확산 16
Ⅵ. 투·융자 계획18

Ⅰ. 수립 배경

□ 수립 배경

- 변화된 어업환경을 고려하여, 수산자원 관리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해 5년 단위「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수립·추진중
 - * 「수산자원관리법」제7조에 따라 동·서·남해와 제주 부근해역(내수면 제외)을 대상으로 수산자원관리 기본방향, 자원조사·평가체제, 수산자원 회복계획, TAC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1~'25)」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수산자원관리법」 제8조제1항)
-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기
 위해 5개 주요과제, 13개 세부 추진과제 추진
 - TAC(총허용어획량) 참여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 스마트 TAC 관리 인프라 구축 등 TAC에 기반한 수산자원 회복·관리 정책 추진
 - 개별 어종이 아닌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수산자원 조사·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연근해 서식·생태 환경을 조성
 - 민간의 자율과 참여가 함께하는 수산자원 정책 추진

< 추진과제 : 5개 주요 추진과제, 13개 세부 추진과제 >

	주요 추진과제 (5개)	세부 추진과제 (13개)
1	TAC 기반 자원관리	① TAC 참여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 ② 스마트 TAC 관리 인프라 구축
2	감소된 수산자원의 회복	① 감소·고갈 어종 단계적 맞춤형 관리 ② 고래 혼획 저감 및 관리 강화 ③ 수산자원회복계획 실효성 제고
3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평가	① 생태계기반 자원평가 활성화 ② 수산자원조사 인프라 확충
4	연근해 서식·생태환경 개선	① 생태계 기반 산란·서식장 조성 ②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관리 합리화
5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문화 확산	① 수산자원보호와 연계한 레저문화 확립 ② 소비자 참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 ③ 자율관리형 수산자원보호 촉진

Ⅱ. 2020년 추진성과 및 평가

1 2020년 추진 성과

□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선진화

- 자원회복을 위해 정부가 특정 어종에 대해 직권으로 TAC 관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수산자원관리법」개정·시행('20.9)
 - * '20년 근해자망(오징어)에 대해 직권으로 추가하여 '21년부터 시행
- TAC 대상어종의 어획량 파악을 위해 **현장사무소* 및 수산자원** 조사원** 확충
 - * TAC 현장사무소 : (`16) 3개소 → (`20) 20 / ** 수산자원조사원 : (`16) 70명 → (`20) 95
- 자발적으로 TAC를 포함한 수산자원보호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현행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
 - * '20년 시범사업 대상 : 연안개량안강망, 근해안강망
- 어업인 대상 찾아가는 현장 정책설명회(4회) 및 유관기관 협의회(2회), 전문가 자문 회의(2회) 등을 통한 정책 이해도 증진 및 TAC 제도 개선 의견 수렴

②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 인프라 확충

- 국내 최대규모 1,600톤급 수산자원조사선 '탐구23호' 건조를 완료 하였으며('20.9), 첨단 조사장비를 장착하여 선진화된 조사 추진
 - * 기존 탐구22호 탑재 장비(15개) 외 딥비전, 해양데이터 운영시스템 등 12개 새로운 장비를 포함하여 총 27종 조사장비 탑재
- 전용조사선 4척을 활용하여 **연중조사**를 추진하고 **조사빈도·정점 확대**
 - * 조사빈도 : 연2회 → 4회 / 조사간격: 30마일 → 10마일 / 조사수심 : 단층(저층) → 다층
 - ** 조사정점 확대 : ('16) 147 →('17) 191 →('18) 257 →('19)354 →('20) 500개 정점
-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를 위해 해역별·어종별 **산란·성육장** 및 **회유 경로** 등 실태조사 추진
 - 바이오로깅 기술*을 활용하여 진해만 대구의 산란기 행동 특성 규명
 - * 해양생물에 소형기록계를 달아 생태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기술

③ 수산자원 회복 계획 추진

○ 살오징어 등 자원관리 필요 어종 14개에 대해 **금어기·금지체장** 신설 및 강화 등 조정 완료(*20.9월)

어종	개정사항	어종	개정사항
살오징어	정치망 금어기 신설(4.1.~4.30.)	가서 도	금어기 신설(5.1.~5.31.)
들포증이	금지체장 강화(12→15cm)	감성돔	금지체장 강화(20→25cm)
기름가자미		감성돔	금어기 신설(5.1.~5.31.)
용가자미	금지체장 신설・강화(20cm,	넙치	금지체장 강화(21→35cm)
문치가자미	23.12.31까지는 17cm 적용)	대문어	금지체중 강화(400→600g)
참가자미		청어	금지체장 신설(20cm)
ᡮ ┡ ■ △	급어기 신설(5.16~6.30)	FII 7	금어기 일원화(1.16.~2.15.)
참문어	5.1~9.15 중 46일 이상 시·도 별도 지정 가능	대구	금지체장 강화(30→35cm)
미거지	금어기 삭제	넓미역	제주도 고시로 금어기 조정 가능

- **민간 자율휴어 확대**를 위해 대형선망을 대상으로 휴어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실시**('19~'20)
- 자원조사를 통해 **수산자원회복대상종**으로 **멸치 신규 지정** 및 20개 회복대상종 **자원회복 권고안 마련**('20.12)

④ 수산자원 서식 및 생태환경 개선

- 갯녹음 자연암반 복원, 포자확산용 저연승 시설 등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바다숲 2,768ha 조성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바다목장** 40개소('06~'20) 조성 완료 및 해역별 특화어종의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수산자원 공급 거점 마련
 - 수산자원관리 필요종인 7개 품종('15~'20)에 대한 9개소 조성완료
 - * 바지락 주꾸미 대문어 대게 해삼 낙지 꼼치 / 홍성 보령 태안 동해 울진 영덕 군산 해남 통영
- 자연집단과 방류종자의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 보유 어미의 **유전적 다양성 관리 강화****
 - * ('16) 8종 \rightarrow ('19) 11종 \rightarrow ('20) 대구 추가(12종) / **('17) 3종 \rightarrow ('19~'20) 5종
- 연안 어선어장의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를 확대하고, 수산자원보호 구역 지정현황, 환경·수산자원 현황 등을 제공하는 관리시스템 구축
 - * 폐어구 수거량 : ('17) 2,179톤 → ('18) 2,219톤 → ('19) 2,273톤 → ('20) 2,654톤

5 자율관리 어업 내실화

-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1.2)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 법률에서 위임한 민간단체의 범위, 공동체 구성 및 등록, 과태료 부과 기준, 실태조사 범위·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위해 교육·컨설팅 강화
 - 공동체 우수사례, 활동일지 작성 방법,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하여 교육 교재 제작 후 전국 공동체·관계기관 등에 배포(약 25천부)
 - 어업인·지역·업종 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율조정협의회 운영 및 민간 컨설턴트를 통해 자율관리공동체 참여 확산 유도
- 공동체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자율관리어업 종합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쌍방향* 정보 전달
 - * 공동체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묻고 답하기, 우리 공동체 소식 등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와 공동체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구축

⑤ 비어업적 수산자원 관리 강화

-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의 판매 등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개정·시행('20.2)
-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수 없도록 「수산자원관리법」개정·시행**(*20.9)
- 어린물고기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세계자원 기금(WWF)과 함께 '치어럽' 캠페인 확대 추진
 - 금지체장을 표시한 손목밴드를 제작하여 온라인 배송기업(SSG)과 협업하여 배포
 - * 뉴욕 광고 대상제 동상 수상('20.5), 대한민국 광고대전 공익광고 대상 수상('20.10)
 - 제5회 **수산자원을 부탁海 공모전** 개최 및 수상작 활용 기념품 (이모티콘, 치어럽 마스크줄) 제작・배포

2 보완 필요 사항

① TAC 참여 및 조사 인프라 확대 필요

- TAC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업종 중 주요업종만 TAC 제도에 참여함에 따라 미참여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및 효율적 자원관리에 한계
- 수산 자원관리를 위해 TAC 어종 및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 필요
- TAC 지정 판매장소는 121개소이나 현재 조사원은 95명으로 TAC 모니터링 사각지대 발생 가능, 면밀한 수산자원 조사에 한계
 - * 2030년 연근해어획량 대비 TAC 관리 비율이 목표치인 80%에 도달할 경우 매년 연근해 생산량의 80%(80만톤) 및 15,000여척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가 필요

② 수산자원회복 정책의 실효성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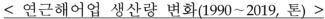
- 수산자원회복계획의 법적 근거가 없어 어종별 권고안의 실질 이행 수준이 저조하고, 회복·관리 정책의 현장 수용도가 낮음
- 어업 현장의 반발로 금어기·금지체장 개정에 장기간 소요('19.5월 입법예고, '20.9월 개정), 실제 자원보호에 필요한 기준보다 완화되어 개정*
 - * 살오징어(실제19→완화15cm 이하), 대문어(1→0.6kg 이하), 가자미류(20→17cm 이하)
- 수산자원조사 전용선(4척)의 **방대한 자원조사 정보를** 분석하고 지표화하여 평가할 조사(現 14명)·평가(現 3명) 전담연구인력은 여전히 부족
 - * 자원조사인력은 일본 102명, 미국 58명('12년) 등 해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1인당 1어종을 평가하는 일본·호주·뉴질랜드에 비해 1인당 15개 이상 어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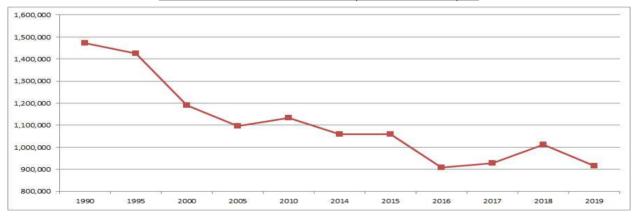
③ 수산자원보호 인식의 대중화 필요

○ 낚시인 등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 하고, 일반 소비자의 **윤리적인 수산물 소비문화 확산**의 중요성이 대두

Ⅲ. 2021년 연근해 수산자원 동향

- □ (수산자원)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불법어업, 과도한 어획, 어린물고기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 회복세 둔화
 - 어선수는 감소하나 **어선마력 수 증가** 및 **장비의 현대화**로 **어획 능력이 향상**되고, 어린물고기 어획 증가로 자원의 **산란재생산 악화**
 - * '80년 기준, 연근해 어선 총톤수가 '99년 1.29배 까지 최대로 증가 후, 어선감척으로 '18년 0.66 수준으로 감소. 반면 어획성능은 '99년 1.93배, '18년 2.21배로 꾸준히 증가
 - 주요 어종(50종)에 대해 어종별 자원수준('99년 이후 자원상태)은 낮음 5종, 자원동향(최근 5년간 자원변동)은 감소경향 9종으로 분석
- □ (어업생산) 어획량은 '70년대 평균 120만톤에서 '80년대 152만톤 으로 증가 후 '90년대부터 꾸준한 감소세로 전환
 - '20년도 생산량은 **93만톤(잠정)으로 전년(91만톤) 대비 1.9% 증가** 하였으며, 갈치, 멸치, 참조기 등의 생산증가에 기인





- □ (2021년 전망) 국내 수산물 소비량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산자원에 대한 어업 압력 또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우리나라) : ('01년) 42.2kg → ('18년) 68.1kg, 61.4% 증가 수산물 자급률 : ('01년) 81.0% → ('18년) 69.3%, 11.7%p 감소
 - TAC 대상어종 확대 등으로 2021년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금년 대비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자원관리 강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수산자원회복에 따른 어업 생산량 증가가 전망되나, 단기적으로는 보합수준으로 예상

Ⅳ. 2021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자원관리

- 삼치(대형선망, 쌍끌이), 멸치(기선권현망) 등 **대중성 어종에 TAC를** 확대하고, 스마트 TAC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TAC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경영개선자금 확대('20년 82.7억원 → '21년 94.5억원), 감척 및 어장정화 지원사업 시 우선 지원 등 TAC 참여 어업인 지원 강화

② 감소된 수산자원의 회복

- 금어기 및 금지체장(체중)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신설·강화되는 어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강화 및 정책효과 모니터링 실시
- 「수산자원회복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주요 내용·절차 개선으로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평가·환류를 통해 자원회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

③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평가

- 생태계기반 자원평가 활성화를 위해 조사범위 및 항목을 확대하고, AI 기법 활용 예측모델을 구축하여 장·단기 자원변동 예측 실시
 - 바이오로깅 시스템 고도화, 수산자원조사선 및 전문인력 확충,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수산자원조사 역량 강화

④ 연근해 서식·생태환경 개선

- 바다생태계 복원을 위한 **바다숲을 조성**하고,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산란·서식장**과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바다목장 조성**
 - 생분해성 어구 보급, 침적 폐어구 수거로 연근해 어장의 생산성 개선

5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문화 확산

- 지속가능한 낚시 등 건전한 레저문화 확립을 위한 낚시인 대상 홍보, 수산물의 윤리적 소비 장려를 위한 정보제공 실시
 - 자율관리공동체 및 어업자 협약 등 자율관리형 수산자원 보호 촉진

Ⅴ. 2021년 세부 시행계획

1 총허용어획량 기반 자원관리

① TAC 참여 단계적 확대 및 지원 강화

- 시범 적용 어종(참조기, 갈치, 삼치)의 정식 어종 추진 검토 및 멸치 등 주요 어종에 대한 TAC 시범 추가 적용 추진
 -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직권 TAC 적용 제도 활용
 - *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 시 수산 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수산자원관리법」개정.시행, '20.9)
- 어선별 할당제(IQ) 정착을 위한 배분량 할당방식 개선
 - 전년도 TAC 소진율이 60% 이하인 어종은 시·도별 유보량을 20%(현재 10%)까지 확대하여 소진율 제고
 - 전배한 물량*은 내년도 TAC 배분량 할당 시, 전배한 어업인의 어획실적으로 반영
 - * 어종별 소진율 80% 또는 전년도 소진율에 도달한 시점
- 어업경영 악화를 겪는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안정자금
 (융자) 지원 확대('20, 82억원 → '21, 95억원)
 -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 업종별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보험상품(안) 개발 및 검토
- TAC 모니터링 내실화 및 어업인 대상 정책이해도 제고
 - 찾아가는 현장 정책설명회 운영, 대국민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TAC 제도에 대한 어업인들의 이해도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

② 스마트 TAC 관리 인프라 구축

- 웹(web) 기반의 실시간 TAC 소진량 관리*를 위해 조사 어획물 정보를 표준화·자동화하여 입력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 개발 추진
 - * 조사원에게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어선 입출항 정보 및 어획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조사원은 실제 어획량을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관리
 - ICT 기술을 활용한 TAC 설정량 및 어획량 등의 실시간 관리 시스템 세부계획 수립
 - 수산자원조사원 증원*, 지역별 현장사무소 확충**, 조사원 교육 강화로 TAC 조사·관리 역량 강화
 - * 수산자원조사원(명) : ('20) 95 → ('21) 120 / ** 현장사무소(개소) : ('20) 20 → ('21) 21
- TAC 제도 추진 현황 및 TAC 정보(어선정보 등) 갱신 등 관계기관 간 제도 점검 및 의견 교류를 위한 TAC 협의체 구성·운영
 - * 해수부, 지자체, 수과원, 어업관리단, FIRA, 수협, KMI 등 전문가들로 구성
 - ** 양륙항 모니터링 정보 수시 공유 및 WG 개최를 통한 정기적 실태 점검
- TAC 참여 어선의 입항시간 및 장소 사전공유, 위판정보 사후 대조 등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한 어획량 누락 방지 등 TAC 운영 강화
- TAC 관리의 실효성 제고, 어린물고기 보호 등 자원관리 정책 대응을 위해 어업관리단·지자체·FIRA 합동으로 지정 판매장소 수시점검
- 민·관 합동 TAC 설정으로 자원관리 효과 제고
 - 자원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산하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AC 자원평가 전문위원회 지속 운영
 - * 현장의견수렴 강화를 위하여 어업인을 전문위원회 옵서버로 참여
 - 자문을 위해 대상어종·권역별 내·외부 전문가, 업종별 어업인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운영
 - * 어종별 해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그룹별 운영('20년에는 5개 그룹)

2 | 감소된 수산자원의 회복

① 감소·고갈 어종 단계적·맞춤형 관리

- 금어기·금지체장 관리 강화
 - 신설·강화('21.1.1 시행)된 **12개 어종의 현장정착**을 위해 지도·단속 기관 등과 협력하여 계도·홍보 및 주기적 현장 점검 추진
 - * 금어기 신설 3종(삼치, 감성돔, 참문어), 금지체장 신설 3종(기름가자미, 용가자미, 청어), 금지체장 강화 7종(살오징어, 감성돔, 넙치, 대문어, 대구,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 금어기·금지체장 신설·강화 어종의 자원회복효과 모니터링 추진
 -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에 적용되고 있는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금지기간(4.1~10.31) 설정 관련 **타당성 조사** 실시('19~'22)
 - * '22년까지 자원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을 검토
- 방류종자 인증제를 통해 방류용 종자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
 - * 대상종(넙치) 관리 : 자연산 어미 수집, 교배관리, 수정란 생산·보급, 인증, 모니터링 조사 등 넙치 종자 유전적 다양성 지수 : (시행 전 : '15년) 61.5%→ (시행 5년 차 :'20년) 68.96% 달성
 - 자연집단과 방류종자의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 대상 확대*로 방류효과 분석과 지자체 보유 어미**의 유전적 다양성 관리 강화
 - * ('20) 넙치,조피볼락,전복 등 12종 → ('21) 메기 추가, 13종
 - ** ('21) 참돔, 참조기, 말쥐치, 자바리, 명태, 민어 등 6종
 - 연어 어미화 기술개발을 통한 종자생산으로 자원회복을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연어 자연산란장(1개소) 실시 설계 추진

② 고래 혼획 저감 및 관리 강화

○ 혼획저감어구 개발에 따라 어구 구성, 규격, 사용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어업인 대상 보급 지원 추진('21년, 지방비 포함 27억원) ○ 표류·좌초된 고래에 대한 위판금지, '혼획'의 정의 명확화 등을 통해 고래에 대한 위판을 최소화하고, 고래 자원을 보호(고시 개정)

<고래류 처리 방법 개선(안)>

구분	현행	개정(안)
혼획	위판, 연구용 또는 폐기	동일
좌초	위판, 연구용 또는 폐기	위판불가, 동일
표류	위판, 연구용 또는 폐기	위판불가, 동일
불법포획	공매가능	공매불가, 폐기

- 위판 고래류 DNA 분석 결과를 D/B화하고, 고래 생태지도*를 제작하여 고래 혼획저감 정책자료로 활용
 - * 고래 이동경로, 주요 서식지, 좌초 · 표류 지점 등을 분석

③ 「수산자원회복 계획」의 실효성 제고

- 「수산자원 회복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 수립시기 및 절차, 회복계획의 구성요소, 대상종 선정 기준, 시행 주체 등을 규정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 추진
- ○「수산자원 회복계획」운영 방안 개선
 - 기존 **회복대상종 20개종**의 **'22년 권고안을 마련**하고, 회복대상종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 계획의 수립, 이행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가칭) 수산자원 회복·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 분과를 설치하여 운영
 - *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 FIRA,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자체, 수협, 소비자단체 등 참여
 - 수산자원 회복·관리 정책의 성과지표로 '수산자원회복·관리 지수' 를 개발하여, '조사-평가-회복정책-이행' 등 자원관리 전주기를 평가
 - * FAO에서 각 국가별 자원관리 정도 파악시 활용하는 자원관리지수(Fisheries Management Index)를 한국형으로 개선하여 조사·평가, 회복사업 등의 효과를 지수로 관리
 - 일반 국민이 회복대상종을 인지하고 자원회복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안 홍보본*을 마련하여 배포
 - * 주요 상업어종의 자원상태, 자원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개인별 실천방안 등 포함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ㆍ평가

① 생태계 기반 통합자원평가 활성화

3

-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를 위한 조사 범위 확대
 -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지표 수집을 위한 조사항목 추가·보완 및 신규조사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 (추가) ▲낚시·레저 조획량, ▲업종·어구·권역별 어린물고기 포획 실태, ▲회유성 어종의 음향자원정보 규명, (보완) ▲어획노력량(CPUE) 세부조사, ▲사매매 등 비계통 어획량
 - 미성어 혼획 실태 조사 개소(7 → 9개소) 및 조사대상 어종(주요 상업어종 → 전체어종) 확대
 - 연근해 전해역의 자원조사 방식을 **정점조사와 라인조사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기존 정점조사만 실시)
 - * (정점조사) 일정 간격 당 조사정점을 설정하고 정점에서 시험어획 조사 등 실시 (라인조사) 연근해 전해역을 운항하면서 정점이 아닌 라인 형태로 음향조사 등을 실시
- 어란 및 자치어 분포 조사, 고밀도(1~5 마일당 1정점) 산란추정해역 미세조사를 통해 「연근해 산란장 지도」 작성(′19~′21)
 - 중점 관리 어종의 해역별 먹이망 구조와 영양 단계별 변동을 연구하고, 자원구성 기여도 조사를 추진

② 수산자원 조사 인프라 확충

- 바이오로깅 자료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등
 바이오로깅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 * 주요 어종에 전자센서를 부착한 후 방류하여 회유경로, 서식환경 등을 분석
- 수산자원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조사 정보와 어획노력량 산정 정보의 통합관리
 - *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수산자원연구센터, 한국수산자원공단, 지자체, 수협중앙회 등 협의 추진
 - 장기간의 **자원조사 빅데이터 구축**(계속),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 동향 파악

- 첨단 조사장비를 활용해 정밀도를 향상하고, 조사선을 보유장비 유형별로 특화*하여 해역별 정보수집에서 중요 어종별 전략조사로 전환
 - * 수산자원조사선 특화운영(案) : ▲(탐구 20호) 단위조사 업무 ▲(21호) 저어류 조사 ▲(22호) 난자치어 조사 (23호) 부어류 조사
 - 노후선박을 하이브리드형(디젤엔진+배터리 타입)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 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고, 조사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친환경 수산자원조사선 대체건조 계획 >

선박명	탐구8호	탐구7호	탐구2호	탐구19호
 구분	대체	대체	대체	대체
톤수	톤수 800톤급		190톤급	30톤급
승무정원	승무정원 21명		13명	5명
건조 기간	'20~'23	'20~'22	'22~'24	'24~'26

- 자원조사 연구 인력과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전담 연구인력 확충
 - 전담 연구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를 위해 '수산자 원 조사ㆍ평가 연구인력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확충
 - * 자원조사·분석 전담 연구인력 : ('21) 14명 / 자원평가 전담 연구인력 : ('21) 3명
- 수산자원 정밀조사·평가 타당성 검증
 - 조사 계획 수립 시 수과원 조사·평가 담당부서 간 1차 검토를 통해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해수부·외부 전문가·수과원의 2차 검토 후 확정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현안어종조사 심의회'를 구성하여 자원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포획금지 연구대상종의 우선순위 선정
 - '수산자원분야 정책사업 리뷰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원조사· 평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적 활용방안 논의

4 │ 연근해 서식·생태 환경 개선

□ 생태계 기반 산란·서식장 조성

-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바다목장 10개소를 조성**('21년, 5개소 완료) 하여 **연안 수산자원 회복**
 - * 연안바다목장 조성지(누적): ('20년) 40개소→ ('21) 45개소→ ('22) 50개소
 - 대문어·대게·주꾸미·낙지 등 고갈·감소 위기 자원회복 대상종의 산란·서식장 6종·14개소 조성*
 - * 산란·서식장 완료지(누적): ('20) 7종/9개소→ ('21) 7종/9개소→ ('22) 8종/10개소
- 자연암반 개선, 천연해조장 보전, 천연소재 모조(母藻)주머니 및 친환경 부표 사용 등 친환경적 기법을 활용한 바다숲 조성*
 - * 조성지(누적) : ('20) 24,258ha → **('21) 26,644ha**('21년 2,386ha 조성, 최종목표 54,000ha)
 - 바다숲 조성사업의 효과 검증 강화(갯녹음 해소, 탄소흡수원 모니터링)
 - * 바다숲 조성해역 갯녹음 해소율 : ('18) 11.3 → ('19) 15.2 → ('20) 19.3
 - ** 바다숲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 ('20) 81,830톤→('21) 89,878톤 (바다숲 1ha당 약 3.37톤/연)
 - 바다식목일(5월10일)과 연계한 교육·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
-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천연보호구역 등 무인도서를 활용한 「무인도서 거점 자원조성사업」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②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 수중에서 일정기간 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지원(52억원)하고, 유실·침적된 폐어구 수거 확대(2,700톤)
 - 과학적·전략적 폐어구 수거를 위해 '침적폐어구 분포도'를 현행화하고, 사업프로세스 개선 및 중장기 계획 마련 추진
- 유령어업 예방을 위한 **어업인 및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 * 공모전, 바이럴 영상 제작·배포, 방송 PPL 등 영향력 있는 콘텐츠에 집중

- 효율적인 폐어구 수거·처리를 위하여 **어구일제회수*** 및 **폐어구 집 하장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 제한, 어구 수거 명령 발령 후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방식



<폐어구 수거 현장>



<폐어구에 걸린 수산자워>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관리 합리화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수질환경, 서식환경, 자원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시스템'을 통해 D/B화
 - * ('20) 해수면2개소(남해통영 I,Ⅱ) 내수면4개소(남양호, 예당호, 아산호, 삽교호) → ('21) 해수면2개소(한산만, 천수만), 내수면4개소(괴산호, 대청호, 안동호, 남대천)
- 연구기관,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정보를 열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 현황, 환경조사 위치, 수산자원 분포 등을 포함한 누리집 개설

3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 촉진

① 수산자원보호와 연계한 레저문화 확립

- 낚시 조획량·인구(지역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산업 규모 등에 관한 낚시산업 실태조사 추진
- **낚시인**의 수산자원보호 **인식 제고**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실시**
 - * 낚시어선업자 대상 전문 교육시 수산자원보호 콘텐츠(낚시 대상 종류·체장, 금지체장 등) 포함, 낚시 명예감시원(100명) 운영, 낚시채널·KTV 활용 광고 등 추진
 - 지자체 및 낚시단체 등과 협업하여 **낚시 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 등 전개

② 소비자 참여 수산자원관리 강화

- 수산자원 관리·회복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소통 워크숍, 설문
 조사 실시 등 소비자단체 의견수렴 확대
 - 수산자원 어획정보, 소비권장 체장 및 시기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신호등 체계 지속가능한 수산물 알림서비스' 웹* 구축·운영
 - * TAC 및 자원회복 대상어종 25종에 대해 수산자원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모바일 형태의 운영체계 추가 구축에 대해 검토
- 올바른 수산물 소비, 어린물고기 보호 등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
 -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치어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알배기 어미물고기 보호 캠페인' 병행 추진
 - * 「대한민국 수산대전」 및 영화관 등과 연계하여 소비자 참여 촉진, 치어·알배기 물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산상품 및 레시피 등 홍보
 -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회복정책의 대국민 정보 공개 경로 확대
 - * 치어럽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통해 수산자원회복정책 관련 다양한 소식 공유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수산정보포털에 금어기·금지체장 제도 안내 추가
 - 수산자원보호 대국민 '치어럽' 캠페인의 일환으로 **금융상품**(예· 적금 통장) **기획'개발 추진**

③ 자율관리형 수산자원 보호 활성화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중심의 자원관리
 -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지원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수립
 - 공동체 구성원 및 미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 등을 교육,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컨설턴트 운영
 - * (교육) '21년 5,630명, (컨설턴트) '21년 540개소, (홍보) 소식지 月 2,000부 발간
 - 개별 공동체의 자원 관리 조성 성과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111개소)
 - 어업인·지역·업종 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율조정협의회 운영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협력 강화
 - 자율관리어업인의 참여의식 고취 및 정보교류를 위해 「제15회 자율 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 * '21.11월중 / 창원 컨벤션센터 / 기념식, 정부포상, 우수사례 발표, 토론, 교육 등
 - 공동체간 정보 교류 확산을 위한 **현장방문형 교육**을 **확대**('21.15회) 하고, 국내·외 선진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답사 추진
- **강화된 자원보호방안**이 적용되는 **어업자협약 관리 강화**
 - 어업자(단체)의 강화된 **자원보호방안 준수를 조건***으로 금어기· 금지체장이 완화된 **어업자협약**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
 - * 그물코확대, 휴어, TAC 참여, 조업실적 보고, 조업금지구역설정, 조업감시장비 장착 등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추진
 - 정액(2톤미만 150만원)·정률(2톤초과 톤당 65~75만원)의 **직불금**을 총 1천척에 지급(81억원)하고, 중장기 **지원대상 확대***
 - * (직불금 확대) 2톤미만: ('21) 380척 / 2톤초과: ('21) 620척

Ⅵ. 투·융자 계획

(단위: 백만원)

	ᅰ᠐ᄖ		연차별 투자액	(단위: 백만원)
사 업 별	재원별	2019	2020	2021
	계	174,471	115,738	119,429
총 계	국 비	166,197	107,464	109,979
	융자	8,274	8,274	9,450
	소 계	11,391	11,885	13,455
1.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자원관리	국 비	3,117	3,611	4,005
	융자금	8,274	8,274	9,450
2 7사다 스시티웨이 취임	소 계	2,020	1,971	1,962
2. 감소된 수산자원의 회복	국 비	2,020	1,971	1,962
3.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소 계	17,621	12,082	20,673
조사·평가	국 비	17,621	12,082	20,673
4. 연근해 서식·생태환경	소 계	131,266	77,059	73,826
개선	국 비	131,266	77,059	73,826
5.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	소 계	12,173	12,741	9,513
문화 확산	국 비	12,173	12,741	9,513

연근해 주요 수산자원 어획량 현황 (상위 30개 어종)

연번	ᄑᄌᄖ	2015(4)	2016	2017	2010	2010/P)	증	 감
선민	품종별	2015(A)	2016	2017	2018	2019(B)	В-А	(B-A)/A,%
1	멸치	211,574	140,958	210,943	188,528	171,677	-39,897	-18.86
2	고등어	131,735	133,200	103,870	141,513	101,282	-30,453	-23.12
3	살오징어	155,743	121,691	87,024	46,274	51,750	-103,993	-66.77
4	갈치	41,049	32,331	54,481	49,450	43,479	2,430	5.92
5	전갱이류	43,362	21,620	21,294	27,019	43,053	-309	-0.71
6	삼치류	37,872	35,886	38,306	32,089	37,841	-31	-0.08
7	굴류	21,484	14,076	14,539	38,341	31,092	9,608	44.72
8	청어	25,903	24,207	32,519	24,035	25,771	-132	-0.51
9	참조기	33,254	19,271	19,398	23,274	25,741	-7,513	-22.59
10	바지락	15,241	13,517	17,261	31,607	23,773	8,532	55.98
11	망치고등어	8,889	22,244	11,390	74,403	20,252	11,363	127.83
12	아귀류	11,888	13,838	15,335	13,448	18,458	6,570	55.27
13	방어류	8,827	14,642	16,483	13,434	15,934	7,107	80.51
14	붉은대게	41,647	36,180	29,686	20,344	15,874	-25,773	-61.88
15	기타어류	26,159	23,483	13,972	21,016	14,717	-11,442	-43.74
16	가자미류	14,925	12,023	11,212	12,292	14,674	-251	-1.68
17	까나리	2,110	7,265	7,024	7,048	14,252	12,142	575.45
18	고등류	6,949	7,143	7,372	8,162	12,976	6,027	86.73
19	젓새우류	11,730	16,207	12,812	13,478	12,844	1,114	9.50
20	붕장어	12,641	12,631	10,965	11,766	12,447	-194	-1.53
21	꽃게	16,374	11,751	12,941	11,770	12,306	-4,068	-24.84
22	전어	5,473	4,612	10,562	11,520	10,564	5,091	93.02
23	문어류	8,753	9,408	10,082	9,744	9,807	1,054	12.04
24	대구	7,820	4,975	6,479	7,511	9,520	1,700	21.74
25	기타새우류	7,537	6,335	7,838	11,784	9,411	1,874	24.86
26	갑오징어류	5,329	4,453	4,870	6,039	8,762	3,433	64.42
27	정어리	2,911	5,208	8,187	7,271	8,762	5,851	201.00
28	병어류	3,314	4,747	5,909	8,268	8,678	5,364	161.86
29	키조개	4,510	8,170	5,355	5,854	7,489	2,979	66.05
30	낙지류	6,690	6,399	6,067	5,725	5,918	-772	-11.54

총허용어획량(TAC) 어종별·업종별 현황

(단위: 톤)

			시행기		위: 돈)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19.7.~'20.6.	'20.7.~'21.6.	비고
ᅔᆌ			19.7.~ 20.0.	20.7.~ 21.0.	
총 계 (12종)	14개 업종		308,735	289,863	
【해양수산	부장관 관리대상종 8종]			
	합 계		303,971	284,392	
고 등 어	대형선망	근해	132,452	123,527	
전 갱 이	대형선망	근해	30,727	29,424	
붉은대게	근해통발	동해 근해	26,630	25,516	
키 조 개	작수기	인천.경기.충남.	7 427	8,542	 전남
기소개	ロープロ	전북.전남.경남 연근해	7,437	(유보량) 40	유보량
대 게	근해자망, 근해통발	동해 연안 및 한일중간수역	1,003	1,036	
 꽃 게	연근해자망, 연안통발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5,798	5,033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연근해	81,523	71,037	
		원근에	(유보량) 4,290	(유보량) 3,738	
오 징 어	쌍끌이대형저인망	연근해	10,726	10,597	
포 6 시		正드에 -	(유보량) 564	(유보량) 558	
	근해자망	연근해	(신규)	2,648	
	트웨시 6	正도에	(11)	(유보량) 500	
도 루 묵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동해 연근해	2,821	2,196	
【지방자치	단체장 관리대상종 4종]			
	합 계		3,203	5,471	
개 조 개	잠수기	부산.경남.전남 연근해	1,551	1,507	
참 홍 어	근해연승, 연안복합	서해 북위 37도 이북해역, 흑산도 근해	377	447	
제주소라	마을어업	제주도 연안	1,275	1,879	
바지락	잠수기어업	경남 거제	1,561	1,638	

수산자원 조성 사업 현황

□ 바다숲 조성('09년부터 '30년까지 54천ha를 목표로 '20년까지 24,258ha 조성)

구 분	합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개소수	194	7	10	11	10	9	19	21	24	18	20	24	21
조성면적 (ha)	24,258	121	250	715	860	1,388	2,575	3,236	3,064	3,043	3,108	3,130	2,768
사업비 (억원)	3,143	100	150	130	159	183	327	357	347	352	352	352	334

^{*} 바다숲 조성사업은 국비 100% 사업임

□ **산란·서식장 조성**('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년까지 7개품종, 9개소 완료)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누계	6	6	6	10	14	14
	신규	6	-	-	4	4	-
UMBE	완료	-	-	2	1	-	6
사업량 (개소)				홍성(바지락) 태안(주꾸미)	보령(주꾸미)		동해(대문어) 울진·영덕(대게) 군산·해남(해삼) 해남(낙지) 통영(꼼치)
사업비	(억원)	56	56	36	84	144	144

^{*}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임

□ 바다목장 조성('06년부터 '22년까지 50개소를 목표로 '20년까지 40개소 완료)

구	분	합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누계	-	12	17	21	26	30	36	36	40	45	50	50	50
사업량	수행	-	12	17	17	18	20	24	19	19	19	20	14	14
(개소)	신규	-	3	5	4	5	4	6	-	4	5	5	-	-
	완료	-	-	4	4	2	2	5	4	5	4	6	-	4
신- 조성 :	규 해역		기장 신안 서귀포 (강정)	타서진영S울	강진수주제 (다대)	진행성)양안항영 왕박대양부포통	선에 이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기인중군남제(북제금)	-	삼타(부)안부)령시 (남보)상도)	지차웰차덕안부안좌성교 용덕자삼긴태중긴안보벨	산되창도외하다면서 안患고완단보남자추다	-	-
사업비	(억원)	2,150	120	170	170	190	210	240	190	190	190	200	140	140

^{*}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임

참고 4 자율관리어업 관련 통계 현황

□ 연도별, 유형별 참여 공동체 현황

구 분	′13	′14	′ 15	′1 6	′17	′18	′19	′20
공동체(개소)	1,039	1,086	1,131	1,160	1,170	1,108	1,120	1,133
(전년대비 증가율,%)	(5.0%)	(5.0%)	(4.1%)	(2.6%)	(0.9%)	(-5.3%)	(1.1%)	(1.2%)
- 마을어업	502	518	539	551	554	519	520	523
- 양식어업	98	98	102	102	105	100	101	102
- 어선어업	200	207	219	225	227	220	224	227
- 복합어업	176	189	193	199	201	186	190	194
- 내수면어업	63	74	78	83	83	83	85	87
참여어업인(명)	67,687	69,098	70,672	71,795	72,626	66,254	66,223	64,893
(전년대비 증가율,%)	(2.0%)	(2.0%)	(2.3%)	(1.6%)	(1.2%)	(-8.8%)	(0.0%)	(-2.0%)
공동체당평균구성원수(명)	65.1	63.6	62.5	61.9	62.1	59.8	59.1	57.3

□ 시・도별 참여공동체 현황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63	1	6	1	2	7	-	4	5	20	7	8	2
2002	79	2	6	2	2	9	-	5	7	25	8	10	3
2003	122	4	7	3	3	15	-	6	9	28	15	16	6
2004	174	5	8	5	7	16	-	13	10	53	23	19	15
2005	308	5	13	10	12	21	5	27	25	99	37	33	21
2006	445	10	15	13	16	28	5	46	27	147	47	60	31
2007	579	15	25	15	23	39	7	49	38	184	69	76	39
2008	659	15	29	15	24	47	8	50	41	215	73	100	42
2009	758	18	36	16	24	58	12	63	41	236	78	134	42
2010	863	21	40	18	29	71	16	74	41	258	87	163	45
2011	932 (63,860)	25 (1,990)	43 (3,374)	20 (1,744)	32 (2,073)	82 (5,499)	17 (339)	82 (7,029)	44 (3,137)	271 (19,445)	91 (4,888)	177 (9,165)	48 (5,177)
2012	989 (66,410)	28 (2,104)	50 (3,772)	20 (1,740)	34 (2,137	82 (5,429)	17 (348)	91 (7,417)	46 (3,188)	289 (20,200)	97 (5,256)	180 (9,153)	55 (5,666)
2013	1,039 (67,687)	31 (2,188)	53 (3,970)	21 (1,775)	36 (2,115)	84 (5,521)	18 (351)	99 (7,927)	50 (3,308)	293 (20,426)	106 (5,513)	193 (9,564)	55 (5,029)
2014	1,086	33	54	22	36	89	19	107	53	301	112	203	57
2014	(69,098)	(2,257)	(4,107)	(1,792)	(2,124)	(5,526)	(380)	(8,170)	(3,557)	(20,719)	(5,274)	(9,970)	(5,222)
201E	1,131	35	55	22	39	93	20	115	55	305	113	222	57
2015	70,672	(2,390)	(4,282)	(1,840)	(2,228)	(5,666)	(377)	(8,681)	(3,540)	(20,645)	(5,633)	(10,509)	(4,881)
2016	1,160	37	55	23	39	93	22	123	56	308	117	230	57
2010	71,795	(2,535)	(4,282)	(1,860)	(2,232)	(5,666)	(388)	(9,156)	(3,573)	(20,745)	(5,748)	(10,729)	(4,881)
2017	1,170	37	55	23	38	95	21	128	56	312	117	231	57
	72,626	(2,580)	(4,282)	(1,769)	(2,349)	(5,536)	(326)	(9,507)	(3,573)	(21,025)	(5,674)	(10,684)	(5,321)
2018	1,108	35	53	23	38	87	21	114	56	283	116	230	52
	66,254	(2,517)	(4,211)	(1,769)	(2,349)	(5,035)	(326)	(8,319)	(3,549)	(17,581)	(5,727)	(9,965)	(4,906)
2019	1,120	35	53	23	40	87	21	115	57	284	116	237	52
	66,223	(2,517)	(4,211)	(1,778)	(2,414)	(4,903)	(322)	(8,382)	(3,654)	(17,587)	(5,486)	(10,064)	(4,905)
2020	1,133	36	43	24	40	89	21	120	57	287	118	246	52
(어업인수)	64,893	(2,402)	(3,841)	(1,682)	(2,444)	(4,948)	(304)	(8,977)	(3,654)	(17,722)	(5,382)	(9,977)	(3,560)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 총괄

('20년 말 기준) (단위: km²)

계		해수면		내수면			
	소계	수면	육지	소계	수면	육지	
3,171.437	2,862.352	2,494.998	367.354	309.085	266.509	42.576	

□ 해수면 지역별 지정 현황

(단위: km²)

지 역	ΝД	LIIVF O LH	지정면적			
시 역	시·군	대상 읍면	계(A+B)	수면(A)	육지(B)	
합 계	22개	82개	2,862.352	2,494.998	367.354	
충 남	4개	6개	145.377	130.651	14.726	
	보령시	오천면	0.001	0.001	_	
천수만	서산시	부석면	10.162	10.162	_	
신누건	홍성군	결성면, 서부면	29.551	29.238	0.313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105.663	91.250	14.413	
전 남	11개	447	1,509.243	1,270.937	238.306	
	무안군	현경면, 해제면	67.776	48.459	19.317	
함평만	영광군	염산면	91.020	76.950	14.070	
	함평군	함평읍, 손불면	45.172	33.318	11.854	
	강진군	강진읍 등 7개 읍면	75.086	54.590	20.496	
완도	완도군	완도읍 등 5개 읍면	256.730	218.899	37.831	
도암만	장흥군	대덕읍, 회진면	18.939	16.037	2.902	
	해남군	북평면, 북일면	49.197	28.384	20.813	
	고흥군	도양읍 등 9개 읍면	373.91	304.266	69.644	
득량만	장흥군	관산읍, 용산면, 안양면	15.043	15.043	_	
여자만 가막만	보성군	조성면 등 4개면	76.868	75.043	1.825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27.568	27.400	0.168	
	여수시	돌산읍 등 5개 읍면	411.934	372.548	39.386	
경 남	7개	327	1,207.732	1,093.410	114.322	
	창원시	구산진동·진전면	104.956	93.850	11.106	
진동만	통영시	산양읍 등 7개 읍면	476.819	452.629	24.190	
	사천시	서포면	53.476	43.650	9.826	
한산만	거제시	동부면 등 7개 면	193.216	153.045	40.171	
남해-통영1	고성군	고성읍 등 5개 읍면	166.269	141.650	24.619	
남해-통영2	남해군	남해읍 등 7개 읍면	201.959	198.605	3.354	
	하동군	진교면 등 2개 면	11.037	9.981	1.056	

□ 내수면 지역별 지정 현황

(단<u>위: km²</u>)

			I		(단위: Km²		
지역	시·군	대상 읍면	지정면적				
		-	계(A+B)	수면(A)	육지(B)		
계	24개	83개	309.085	266.509	42.576		
경기	3개	137#	30.053	30.053	_		
청평호	가평군	가평읍, 청평면	7.708	7.708	_		
평택호	평택시	팽성읍 등 5개면	15.167	15.167			
남양호	평택시	청북면, 포승읍	3.696	3.696			
71 01	화성시	우정읍 등 4개면	3.482	3.482			
강 원	5개	15개	109.334	76.561	32.773		
	춘천시	동면, 북산면	33.611	32.704	0.907		
소양호	양구군	남면	1.989	1.547	0.442		
	인제군	남면	19.152	17.715	1.437		
춘천호	춘천시	서면, 사북면	8.824	1.118	7.706		
군인오	화천군	하남면	4.474	3.976	0.498		
파로호	화천군	화천읍, 간동면	23.365	10.984	12.381		
파도오	양구군	양구읍, 방산면	13.408	6.726	6.682		
남대천	양양군	양양읍, 서면,손양면	1.426	1.360	0.066		
청평호	춘천시	남산면	3.085	0.431	2.654		
충 북	3개	8개	17.775	17.775	_		
대청호	보은군	회남면	5.302	5.302	_		
네성오	옥천군	안내면 등 4개면	10.970	10.970	_		
괴산호	괴산군	칠성면 등 3개면	1.503	1.503	_		
충 남	3개	13개	38.195	38.195	_		
아산호	아산시	둔포면, 영인면	5.769	5.769	_		
	아산시	인주선장신창면	12.347	12.347	_		
삽교호	당진시	신평·우강·함덕읍	9.978	9.978			
	예산군	신암면	0.506	0.506	_		
예당호	예산군	신양광시·대흥·응봉면	9.595	9.595	_		
전 북	2개	3개	15.420	15.420	_		
옥정호	임실군	운암면, 강진면	11.032	11.032	_		
-	정읍시	산내면	4.388	4.388	_		
전 남	5개	207#	48.598	46.423	2.175		
나주호	나주시	다도면 	5.671	5.661	0.010		
	나주시	공산다시·동강·왕곡면	5.973	5.935	0.038		
영산호	영암군	학산면 등 8개 읍면	20.858	18.731	2.127		
9 C.T.	함평군	학교면, 엄다면	1.234	1.234	_		
	무안군	삼향읍, 일로읍, 몽탄면	13.637	13.637			
보성호	보성군	미력·겸백면	1.225	1.225	_		
경 북	3개	1174	49.710	42.082	7.628		
안동호	안동시	와룡면 등 7개면	39.470	39.470	_		
오십천	영덕군	영덕읍 등 3개면	8.717	2.365	6.352		
왕피천	울진군	근남면	1.523	0.247	1.276		